

# 2024 한 손에 잡히는 사회적기업

A GUIDE TO SOCIAL ENTERPRISE 2024

2024  
한 손에 잡히는 사회적기업  
A GUIDE TO SOCIAL ENTERPRISE 2024

# 1

## 사회적기업 | 개요

---

|                  |    |
|------------------|----|
| 1 사회적기업 이해       | 7  |
| 2 사회적기업 연혁       | 10 |
| 3 사회적기업 현황       | 12 |
| 4 예비사회적기업        | 14 |
| 5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경제기업 | 16 |

# 2

## 사회적기업 | 인증

---

|                  |    |
|------------------|----|
| 1 인증 목적          | 25 |
| 2 인증 요건          | 25 |
| 3 인증 절차          | 28 |
| 4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 안내 | 29 |



# 3

## 사회적기업 | 지원

---

|                      |    |
|----------------------|----|
| 1 사회적기업 지원 개요        | 31 |
| 2 사회적기업 지원 제도 및 지원사업 | 32 |

# 4

## 사회적기업 | 유형

---

|              |    |
|--------------|----|
| 1 일자리제공형     | 43 |
| 2 사회서비스제공형   | 45 |
| 3 혼합형        | 47 |
| 4 지역사회공헌형    | 49 |
| 5 기타(창의·혁신)형 | 51 |



# 사회적기업 현황

2023. 12월 기준

2023. 12월까지 87차에 걸쳐

**총 4,593개  
인증**

**현재  
3,737개소  
활동 중**



| 연도  | 신청    | 인증    | 현재 유지 |
|-----|-------|-------|-------|
| 계   | 6,769 | 4,593 | 3,737 |
| '07 | 166   | 55    | 33    |
| '08 | 285   | 166   | 95    |
| '09 | 199   | 77    | 46    |
| '10 | 408   | 216   | 116   |
| '11 | 224   | 155   | 91    |
| '12 | 317   | 142   | 102   |
| '13 | 469   | 269   | 168   |
| '14 | 481   | 265   | 177   |
| '15 | 427   | 295   | 201   |
| '16 | 326   | 265   | 209   |
| '17 | 306   | 256   | 206   |
| '18 | 372   | 312   | 271   |
| '19 | 555   | 392   | 344   |
| '20 | 519   | 429   | 405   |
| '21 | 657   | 500   | 480   |
| '22 | 532   | 428   | 422   |
| '23 | 526   | 371   | 371   |

(단위 : 개소)

## 조직형태별 현황

| 비영리 768개소 (20.6%) |             |            |             | 영리 2,969개소 (79.4%) |              |               |               |
|-------------------|-------------|------------|-------------|--------------------|--------------|---------------|---------------|
| 민법상<br>법인         | 비영리<br>민간단체 | 사회복지<br>법인 | 사회적<br>협동조합 | 기타법인<br>및 단체       | 상법상<br>회사    | 농어(업)회<br>사법인 | 영농(어)<br>조합법인 |
| 310(8.3%)         | 57(1.5%)    | 74(2.0%)   | 326(8.7%)   | 1(0.1%)            | 2,331(62.3%) | 189(5.1%)     | 116(3.1%)     |

##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별 현황

|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지역사회공헌형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
|--------------|-----------|-----------|-----------|------------|
| 2,488(66.5%) | 310(8.3%) | 346(9.3%) | 206(5.5%) | 387(10.4%) |

## 서비스 분야별 현황

| 문화,<br>예술     | 청소            | 교육             | 사회<br>복지      | 환경            | 간병,<br>가사지원   | 관광,<br>운동    | 보건           | 보육           | 산림보전<br>및 관리 | 문화재         | 고용           | 기타               |
|---------------|---------------|----------------|---------------|---------------|---------------|--------------|--------------|--------------|--------------|-------------|--------------|------------------|
| 355<br>(9.5%) | 299<br>(8.0%) | 383<br>(10.2%) | 158<br>(4.2%) | 140<br>(3.7%) | 106<br>(2.8%) | 89<br>(2.4%) | 22<br>(0.6%) | 12<br>(0.3%) | 23<br>(0.6%) | 6<br>(0.2%) | 14<br>(0.4%) | 2,130<br>(57.1%) |

한 손에 잡히는 사회적기업 2024

# 예비사회적기업 현황

2023. 12월 기준

## 예비사회적기업 총 개수

**2,283개소**

918(부처형) + 1,365(지역형)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총 개수

**918개소**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총 개수

**1,365개소**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의 부처별 지정 현황

| 구분   | 교육부 | 농림축산<br>식품부 | 문화체육<br>관광부 | 보건<br>복지부 | 산림청 | 여성<br>가족부 | 통일부 | 환경부 | 국토<br>교통부 | 문화<br>체육<br>관광부 | 고용<br>노동부 | 계   |
|------|-----|-------------|-------------|-----------|-----|-----------|-----|-----|-----------|-----------------|-----------|-----|
| 지정 수 | 0   | 53          | 11          | 77        | 86  | 78        | 6   | 52  | 53        | 152             | 350       | 918 |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유형별 현황

| 지역사회<br>공헌형 | 사회서비스<br>제공형 | 일자리<br>제공형 | 혼합형 | 기타<br>(창의·혁신)형 | 계   |
|-------------|--------------|------------|-----|----------------|-----|
| 137         | 186          | 170        | 29  | 396            | 918 |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역별 지정 현황

| 경원  | 경기  | 경남 | 경북 | 광주 | 대구 | 대전 | 부산 | 서울  | 세종 | 울산 | 인천 | 전남 | 전북 | 제주 | 충남 | 충북 | 총<br>합계 |
|-----|-----|----|----|----|----|----|----|-----|----|----|----|----|----|----|----|----|---------|
| 103 | 328 | 89 | 72 | 40 | 41 | 52 | 80 | 110 | 9  | 36 | 51 | 75 | 64 | 47 | 82 | 86 | 1,365   |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유형별 현황

| 지역사회<br>공헌형 | 사회서비스<br>제공형 | 일자리<br>제공형 | 혼합형 | 기타<br>(창의·혁신)형 | 계     |
|-------------|--------------|------------|-----|----------------|-------|
| 301         | 210          | 518        | 39  | 297            | 1,365 |

# 1

## 사회적기업 개요

### 1 사회적기업 이해

- 1. 사회적기업이란?
- 2. 사회적기업의 특징
- 3. 사회적기업의 역할

### 2 사회적기업 연혁

### 3 사회적기업 현황

- 1. 양적·질적 성장
- 2. 외연확장

### 4 예비사회적기업

### 5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경제기업

- 1. 사회적경제의 정의
- 2. 사회적경제의 특징
- 3. 사회적경제기업 소개

(부록) 사회적기업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 01 • 사회적기업 이해

### 1. 사회적기업이란?

#### • 넓은 의미의 사회적기업

영리기업과 비영리조직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 (출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 Tip. 더 쉽게 사회적기업 이해하기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한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물건을 팔기 위해 직원을 고용하는 것이 아닌 고용하기 위해 물건을 파는 형태의 기업입니다.

#### • 법적인 의미의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 (출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 2조 제 1항)

#### Tip. 용어 알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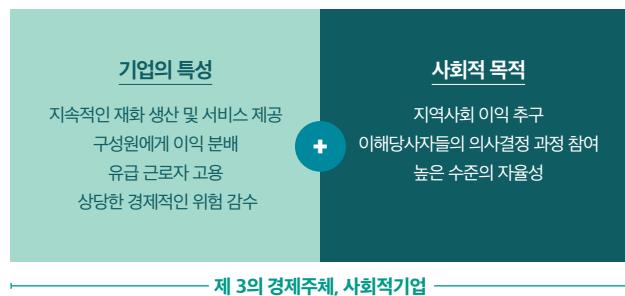
- ▶ **취약계층:**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계층
- ▶ **사회서비스:** 개인과 사회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

#### Tip.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회사만 사회적기업인가요?

사회적기업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때는 넓은 의미로 이해해도 충분합니다. 다만 공식적으로 '사회적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려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 무분별하게 명칭을 사용하는데서 오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제 19조: 사회적기업이 아닌 자는 사회적기업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2. 사회적기업의 특징

사회적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전통적인 기업관과 사회서비스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공익적 목적관을 동시에 지닌 제3의 경제주체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영리성을 추구하는 면에서는 일반 기업의 특성, 공공성을 우선시하는 면에서는 사회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리성과 공공성을 같은 수준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영리성보다는 공공성에 더 중점을 둡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경제에 의한 새로운 기업 형태로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특성’과 공공성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특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지요.

## 3. 사회적기업의 역할

### ·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 취약계층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으로 통합합니다.  
수익을 창출하여 단기·저임금 재정지원 일자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취약계층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합니다.
- 사회서비스 분야의 사회적기업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써 취약계층에게 고용친화적 일자리를 만들어냅니다.
- 또한, 새로운 분야에서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여성 및 경륜 있는 은퇴자에게 창업 기회를 제공합니다.

### ·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 충족

- 기부·후원·자원봉사 등 다양한 사회적 자원과 결합하여 적절한 가격에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공급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경쟁으로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정부의 재정지출도 축소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 지역사회 요구에 민감한 사회적기업은 국가나 시장으로부터 공급되지 못하는 신규 사회서비스 영역을 발굴할 수 있습니다.

### · 지역사회 통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회적기업은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므로 지역사회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합니다.  
사회적 자본을 조성하며 이윤의 지역사회 재투자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줍니다.

### · 윤리적 소비시장 확산

- 사회적기업의 투명 경영과 민간기업과 사회적기업이 함께하는 사회공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윤리 경영 문화 전파에 기여합니다.
-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담은 사회적기업 제품·서비스를 구매하는 등 ‘가치 소비’라는 새로운 소비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 Tip. 일상에서 가치를 만든다. ‘바이소셜(Buy Social)’ 캠페인!

바이소셜은 다양한 가치를 담은 사회적경제 상품·서비스를 구매하고 이들의 가치를 지지함으로써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상 실천 캠페인입니다.  
바이소셜 캠페인은 2012년, SEUK(영국사회적기업협의회)에서 시민, 기업과 공공이 사회적기업 제품을 적극적으로 소비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시작하였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바이소셜은 나, 이웃, 그리고 지구를 한 번 더 생각하는 소비로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상 실천 캠페인입니다. 나의 소비가 사회에 미칠 변화를 생각하는 것, 다양한 가치를 담은 사회적경제 제품을 구매하고 이들의 가치를 지지하는 것, 일상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바이소셜할 수 있답니다.



## 02. 사회적기업 연혁

### 1945년 이후

#### 생산자협동조합 등 자생적으로 등장한 사회적경제조직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본격적으로 태동하기 시작한 사회적경제조직은 해방 이후 신용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으로 점차 그 영역을 확대해나갔습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각 지역 단위로 만들어졌던 의료협동조합은 서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 Tip. 외국에서는 사회적기업이 어떻게 등장하였나요?

**유럽:** 1970년대 후반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국가 재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정부 재정 지출이 축소됨에 따라 복지정책 후퇴의 위기가 오자 시민사회가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 높은 실업률 및 소외계층 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1980년 레이거노믹스의 등장과 함께 연방정부의 사회복지 예산 감축으로 인해 비영리기관의 재정 자립도 향상이 요구되면서 비영리 공익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수익사업이 일반화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 아소키의 창립자 빌 드레이튼이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였습니다.

### 1997년

####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의 변화

1997년 IMF 외환위기는 국민 경제 전반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정부는 실업·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공공근로와 자활사업, 그리고 2003년부터 사회적일자리 창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단기·저임금 일자리로 고용의 질적 수준이 낮고, 국가 재정지원 의존도가 높아 지속가능성이 낮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출처: 전국실업극복 단체연대 외, 2005)

### 2007년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2000년대 고용 없는 성장의 구조화,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 등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정부는 시민사회와 자활 정책 연구 모임과 같은 연구자들이 제안했던 사회적기업의 설립과 법적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07년 사회적기업을 제도화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2007.1.3.)하고 시행(2007.7.1.)하였습니다.

#### Tip. 외국의 법제화 현황은 어떤가요?

국내에서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공포된 2007년의 유럽은 이미 ▲사회적 협동조합(이탈리아) ▲사회적 목적 기업(벨기에) ▲사회연대 협동조합(포르투갈) ▲사회적 목적 협동조합(스페인) ▲집단적 이익 협동조합(프랑스) ▲지역 사회이익 기업(영국) 등 법제화가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 2008년

#### 제 1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 계획 수립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의 단계적 (예비)사회적기업 전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 도입,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이 양성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 2011년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설립

사회적기업의 발굴과 육성을 전담 지원하기 위해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이 설립되었습니다.

### 2012년

#### 제 2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 계획 수립

온·오프라인 판매 채널과 공공구매를 확대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하는 등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강화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 2017년

####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사업개발비 지원 범위 확대

법정부 차원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에 국한되었던 사업개발비 지원이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2018년

#### 제 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 계획 수립

사회적기업 저변 확대와 사회적 가치 중심의 사회적기업 지원, 지역·민간 중심의 지원 체계 조성, 사회적경제 성장 생태계 조성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 2021년

####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대책 발표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①다양한 유통채널 진출 지원, ②시장변화 대응역량 제고, ③공공 판로지원 기반 확충 ④사회적 경제 생태계 강화 등 판로확대와 역량강화에 대한 내용이 담긴 판로지원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 2023년

#### 제 4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 계획 수립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 패러다임을 '육성'에서 '자생'으로 전환하며,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중요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판로지원, 세제지원 내실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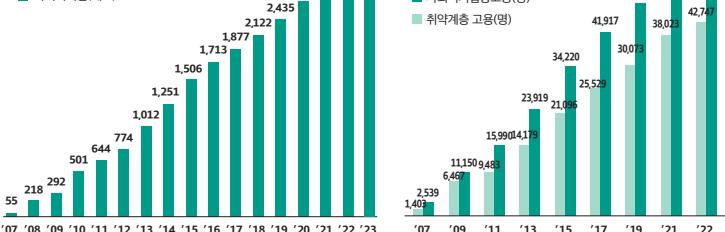
# 03. 사회적기업 현황

## 1. 양적·질적 성장

사회적기업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시장 수요를 개척하고 고용 없는 성장, 저 출산, 고령화와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성장해왔습니다. 2007년 55개소 인증을 시작으로, 2023년 12월 기준 3,737개 기업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아 활동 중입니다. 또한, 사회적기업은 지난 10년간 매출액과 같은 경영 실적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개별 단위의 성장을 넘어 지역과 업종 단위의 다양한 협력을 토대로 한 걸음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증 사회적기업 수(개, 누적)  
(출처: 고용노동부, 2023년 12월 기준)

사회적기업(개수)



### Tip. 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나요?

2022년 12월 기준 사회적기업 근로자는 67,633명에 달하며, 이 중 취약계층 근로자는 42,747명 (63.2%)에 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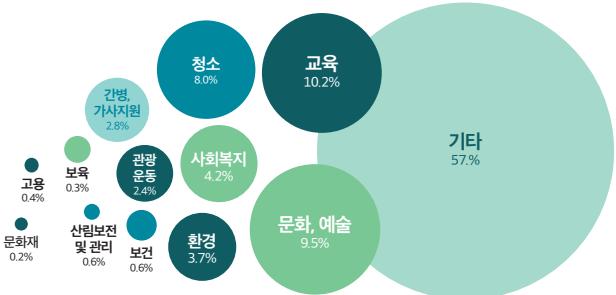
사회적기업이장애인·경력단절여성·고령자 등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웠던 사람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사업체가 1개 기업 평균 5.4명을 고용하는데 비해, 사회적기업은 1개 기업당 평균 19명을 고용하며 높은 고용창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22년 말 기준)

## 2. 외연 확장

세상이 변하는 속도만큼이나, 정부나 시장의 힘만으로는 풀기 힘은 사회문제 또한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며, 다양한 방면으로 외연을 확장해나가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서비스 분야(개)

(출처: 고용노동부, 2023년 12월 기준)



| 문화, 예술        | 청소            | 교育             | 사회복지          | 환경            | 간병, 간호지원         | 관광, 운동       |
|---------------|---------------|----------------|---------------|---------------|------------------|--------------|
| 355<br>(9.5%) | 299<br>(8.0%) | 383<br>(10.2%) | 158<br>(4.2%) | 140<br>(3.7%) | 106<br>(2.8%)    | 89<br>(2.4%) |
| 보건            | 보육            | 산림 보전 및 관리     | 문화재           | 고용            | 기타               |              |
| 22<br>(0.6%)  | 12<br>(0.3%)  | 23<br>(0.6%)   | 6<br>(0.2%)   | 14<br>(0.4%)  | 2,130<br>(57.1%) |              |

\* 기타-제조·판매업, 식품업(식음료, 도시락 등), 생활용품(화장품, 비누 등) 등

# 04 예비 사회적기업

## 1. 제도 개요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자체 및 중앙부처의 장이 지정하는 기업입니다.



### Tip.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비교

| 사회적기업(인증) |  | 예비사회적기업(지정)   |
|-----------|--|---|
| 근거<br>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규칙<br>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 등   |
| 주관        |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 지방자치단체장, 중앙행정기관장 지정   |
| 요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① 조직 형태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li><li>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li><li>③ 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 제공 등)</li><li>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li><li>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영업수입이 노무비의 50%이상)</li><li>⑥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li></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① 조직 형태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li><li>②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br/>(일자리제공형은 1명 이상 고용 필요)</li><li>③ 사회적 목적 실현 또는 사업계획서 확인<br/>(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 제공 등)</li><li>④ -</li><li>⑤ -</li><li>⑥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li></ul> |
| 신청        | 상시접수   | 연중 일정 공고  |

### 부록 ●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와 진실

#### Q. 사회적기업은 특정 가치관을 지닌 기업인가요?

A. 빈부격차 확대, 고용불안,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대해 정책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한 것은 수많은 서구 선진국이 택할 수밖에 없었던 합리적 선택지였습니다. 국가 재정은 고갈되는 반면 사회서비스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기업'이 주목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한국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지난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책지원을 늘려왔습니다.

즉 사회적기업은 '이념'의 문제 아니라 '현실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이며,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바탕으로 실업·빈곤 등의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 05.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경제기업

불평등, 양극화, 환경파괴 등은 우리 사회가 빠르게 발전해온 과정 속에서 드러워진 그늘입니다. 이윤 극대화라는 시장경제 논리를 따르던 세상은 사회적 가치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회적경제의 방향으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 1. 사회적경제의 정의

- 구성원간 협력·자조를 바탕으로 재화·용역의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17.10)
- 국가·시대별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나, 공통적으로 ①구성원 참여를 바탕으로 ②국가와 시장의 경계에서 ③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④민간의 경제활동을 의미합니다.

| OECD   | EU   | 캐나다 퀘벡  |
|--|--|---|
|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에 내재된 것으로 사회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 | 참여적 경영 시스템을 갖춘 협동조합, 상호 공제조합, 사단, 재단 등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경제적 활동 |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6대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기업의 경제활동<br>구성원·공동체의 필요 충족, 국가로부터의 지원, 민주적 지배구조, 경제적 성과 추구, 출자액에 비례한 배당금지, 해산시 전여재산 태입인 양도 |

### 사회적경제의 다양한 정의

## 2. 사회적경제의 특징

- 자율·민주** 경제적 효율성보다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 1인1표 등 민주적 의사결정에 의한 자율 경영을 통해 운영
- 사회통합** 영리 추구보다 구성원 간 이익 공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우선 추구

- 연대·협력** 시민들이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자발적 공동체를 구성하여 상호 협력
- 경쟁·보완** 일반 영리기업과 경쟁하면서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시장과 정부의 실패를 보완하는 제3의 영역으로 기능

## 3. 사회적경제기업 소개

사회적경제기업은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경제활동을 하되, 공동체의 보편적인 이익과 우리 사회 그리고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데 목적을 둔 기업입니다. 영리기업이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모든 기업의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데 비해, 사회적경제기업은 민주적인 운영 원리를 바탕으로 호혜적인 경제 활동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 4대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와 같은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기업입니다.(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 현황 데이터는 4~5페이지 참고

- 협동조합** 조합원의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결성되어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입니다.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기본법 및 개별 협동조합법)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중 하나인 사회적협동조합은 그중에서 지역주민의 권리 및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가 목적이 아닌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 Tip. 협동조합 7대 원칙 (출처: 국제협동조합연맹(ICA) 100주년 축하시 발표)

-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협동조합은 자발적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성(性)적·사회적·인종적·정치적·종교적 차별 없이 열려있는 조직
-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조합원마다 동등한 투표권(1인 1표)을 가지며, 협동조합연합회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운영
-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협동조합의 자본은 공정하게 조성되고 민주적으로 통제
- (자율과 독립)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주에서 자본을 조달할 때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 함
- (교육·훈련·정보 제공)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젊은 세대와 여론 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
- (협동조합 간의 협동) 국내외에서 공동으로 협력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하고 조합원에게 효과적으로 봉사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조합원의 동의를 토대로 조합이 속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



### Tip. 협동조합 설립 과정

| 절차            | 일반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
| 1<br>발기인 모집   | 조합원 자격을 갖춘 5인 이상       |                             |
| 2<br>정관 작성    | 정관 필수 기재사항 작성          |                             |
| 3<br>설립등의자 모집 | 조합원 자격을 갖춘 5인 이상       | 5인 이상,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 2인 이상 포함 |
| 4<br>창립총회     | 설립등의자 과반수 출석 2/3 이상 찬성 |                             |
| 5<br>설립 신고/인가 | (설립 신고)<br>발기인 → 시/도지사 | (설립 인가)<br>중앙부처의장           |
| 6<br>사무인수인계   | 발기인 → 이사장              |                             |
| 7<br>출자금 납입   | 조합원 → 이사장              |                             |
| 8<br>설립등기     | 관할 등기소                 |                             |
| 9<br>사업자등록    | 관할 세무서                 |                             |

\* 협동조합 설립 관련 안내: 협동조합 홍보포털([www.coop.go.kr](http://www.coop.go.kr))

### 협동조합 유형별 설립 수리(인가) 현황

(출처: 기획재정부, 2023년 12월말 기준)  
협동조합 전국 23,625개('22.말) 설립 → 25,666개('23.말) 설립

| 구분          | 설립현황(비중)            |
|-------------|---------------------|
| (일반)협동조합    | 20,725(80.7%)       |
| 사회적협동조합     | 4,809(18.7%)        |
| (일반)협동조합연합회 | 96(0.4%)            |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25(0.1%)            |
|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11(0.0%)            |
| <b>총계</b>   | <b>25,666(100%)</b> |

### 협동조합 지역별 설립 수리(인가) 현황

(출처: 출처: 기획재정부, 2023년 12월말 기준)

| 구분        | 총계            |
|-----------|---------------|
| 서울특별시     | 5,127         |
| 경기도       | 4,774         |
| 전라북도      | 1,740         |
| 전라남도      | 1,591         |
| 강원도       | 1,472         |
| 경상북도      | 1,327         |
| 경상남도      | 1,348         |
| 충청남도      | 1,245         |
| 광주광역시     | 1,152         |
| <b>총계</b> | <b>25,666</b> |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부처별 설립 인가 현황

(출처: 기획재정부, 2023년 12월말 기준)

사회적협동조합 전국 4,057개('22.말) 설립 → 4,809개('23.말) 설립

\* 설립 신고·인가 누계 기준, 해산·인가취소 등의 사유로 일부 변동 있음

| 구분             | 총계           |
|----------------|--------------|
| 보건복지부          | 1,920        |
| 교육부            | 671          |
| 국토교통부          | 374          |
| 고용노동부          | 373          |
| 문화체육관광부        | 371          |
| 농림축산식품부        | 199          |
| 행정안전부          | 163          |
| 산림청            | 148          |
| 환경부            | 124          |
| 기획재정부          | 117          |
| 연합회(일반·사회적·이종) | 132          |
| 여성가족부          | 95           |
| 산업통상자원부        | 94           |
| 중소벤처기업부        | 80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4           |
| 국가유산청(구.문화재청)  | 11           |
| 해양수산부          | 9            |
| <b>총계</b>      | <b>4,941</b> |

- **마을기업**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입니다.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 Tip. 용어 정리

- (지역자원)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연적·문화적·역사적 자산
- (지역문제) 전체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지역공동체 이익) 마을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얻게 되는 편의의 총합
- (마을) 지리적으로 타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 내부에 상호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 설립요건: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한 법인으로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을 갖춘 법인

#### Tip. 마을기업 운영원칙 (출처: 행정안전부)

- (공동체성) 기업의 구성 운영에 있어 공동체를 중심으로 자발적 참여, 민주적 운영,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체회복 및 사회통합에 이바지해야 함
- (공공성) 호혜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내에서 다양한 공헌 및 상생을 위한 활동을 통해 공익적 및 공공적 가치를 창출하여야 함
- (지역성) 지역을 근거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주도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내에서 생산·소비·교환·분배가 이루어지는 선순환구조를 통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해야 함
- (기업성) 시장경쟁력이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안정적인 매출 및 수익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함

#### Tip. 마을기업 지정 과정



\*매년 10월 전후로 신규마을기업 공고(해당 시·도 주관) 예정

- **자활기업**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습득된 기술을 바탕으로 1인 혹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생산자협동조합이나 공동사업자 형태로 운영되는 기업입니다.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설립요건:

| 구성원                | 설립방식                    | 설립절차                                   |
|--------------------|-------------------------|--|
|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절차 및 타 법령 상 조합 설립 절차에 따름 |

#### Tip. 자활기업의 미래 (출처: 보건복지부)

1. 자활기업 활성화 통한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및 탈빈곤 촉진
  - 자활기업 신규창업 확대
  - 수의형 자활기업 육성
  - 자활기업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사회공헌도 증대
2. 전국 및 광역단위 자활기업 육성
  - 동종 또는 유사 업종의 광역, 전국 단위의 자활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지원하여 안정적인 저소득층 고용 및 수의 창출
3. 자활기업 경영지원
  - 자활기업 경영, 마케팅 지원을 위한 전문가 pool 구성
  - 자활생산품 및 서비스의 공공구매, 정부재정 일자리 사업 우선 위탁 지원
  - 우수자활상품 품질인증 및 유통업체 입점 지원

- 지원요건:

- ① 자활기업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1/3 이상이어야 함
  - \* 단, 수급자는 반드시 1/5이상이어야 함
- ② 자활기업의 모든 참여자에 대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이 가능하여야 함
- ③ 자활기업 근로일수가 조건이행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 주당 3일, 22시간 이상
- ④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 전환 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
- ⑤ 창업 전 교육 및 보수 교육 이수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기업의 매분기별 사업성과를 “자활정보시스템”에 입력하면 지원대상자활기업으로 확인

## 부록 ● 사회적기업 정보 어디서 볼 수 있을까?

### 당사자조직 네트워크

-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www.ikose.or.kr](http://www.ikose.or.kr)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기업·시민사회와 관심과 지원 유도,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통한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2008년 발족해 현재 1,000여 개의 회원조직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 전국협동조합협의회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의 전국조직으로 2019년 4월 발족, 9개 지역별 협의체와 3개 부문별 연합회가 참여.

### 한국협동조합협의회

신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아이쿱생협연합회 등으로 이뤄진 개별형 협동조합 간 협의체.

### 한국마을기업중앙협회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연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공동체 회복 및 지역사회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 2012년 발족해 1,400여 개 마을기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17개 지부로 구성된 협회.

### 한국자활기업협회

자활기업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조직력을 강화하여 자활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2018년 발족하여 자활기업의 대표 조직으로 12개 지역협회와 4개 업종협회로 구성, 350여개 자활기업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협회.

### 시민사회

-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www.ksenet.org](http://www.ksenet.org)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연대하고 협력하며, 사회적경제의 자율성과 주도성을 지켜나가기 위한 연대조직.

### 사회적경제 활성화 전국 네트워크 <http://knsec.or.kr>

YMCA, YWCA,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3개 시민사회단체가 주축이 되어 2011년 12월 발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정책환경 개선, 시민의식 개선 등의 과제수행을 위해 사회적경제 당사자뿐 아니라 정부와 시민단체, 종교계, 경제단체, 봉사단체 등 다양한 조직들이 연대하고 조직된 네트워크.

### 지원조직 네트워크

#### ·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기관 전국협의회

중앙부처의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광역단위 지원기관의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운영.

#### · 임팩트얼라이언스

한국 최초의 소셜 임팩트 생태계 연대체로 2019년 9월 발족. '지속가능한 소셜 임팩트 생태계 조성'이라는 미션을 갖고 서울 성동구 지역에서 활동하는 소셜벤처 및 지원기관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을 준비하고, 현재 96개사가 회원조직으로 참여.

### 언론

- 머니투데이 클머니 <http://coolmoney.mt.co.kr>

머니투데이가 운영하는 좋은 자본을 지향하고, 사회책임경영, 사회적경제, 시민사회기금 등에 대해 다루는 웹미디어.

-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http://futurechosun.com>

조선일보 공익섹션으로 사회적가치, 사회적경제 등 공익 영역의 뉴스를 온오프라인으로 전하는 미디어.

- 이로운넷 <http://www.eroun.net>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미디어로서, 사회적경제와 사회가치를 추구하는 기업과 개인을 집중 다루는 인터넷 미디어.

- 라이프인 <https://www.lifein.news>

사회적경제 분야 전문 미디어로, 사회적경제분야의 마을소식부터 글로벌 트렌드를 다루는 사회적협동조합이자 비영리 미디어.

-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http://www.heri.kr/>

한겨레 미디어를 기반으로 국내외 지속가능경영, 사회적경제 등을 연구하고 기획 보도하는 전문 싱크탱크.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SNS채널

- 대표 홈페이지/블로그/페이스북/인스타그램/카카오플러스친구

국내외 사회적기업 소개, 각종 지원 정보 등을 수록하며 신속하게 전달하는 채널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  
플러스친구

- 소셜클래스(사회적기업 교육 플랫폼)

사회적경제기업 대표자, 종사자, 예비창업자 등 대상 다양한 분야별(기획·전략, 마케팅·판로, 회계 등) 온오프라인 교육 영상 및 정보 제공



소셜클래스  
(사회적기업 교육 플랫폼)

### 뉴스레터

미디어 시대에 대응하고자 사회적기업 소식을 온라인 뉴스레터로 만들어 격주  
발행. 사회적기업 이슈, 지역 소식, 우수 사례, 각종 정보 등을 담아 일차게 전달



뉴스레터

# 2

## 사회적기업 인증



- 1 인증 목적
- 2 인증 요건
- 3 인증 절차
- 4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 안내

### 01 • 인증 목적

사회적기업 인증제도는 사회적 목적을 우선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을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필요합니다.

- ① 부적절한 사회적기업의 출현 방지를 통해 국민과 사회로부터 사회적기업에 대한 신뢰 확보
- ② 경영과 관련한 일정요건을 갖추게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
- ③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세제·경영·판로 등을 지원하여 초기 성장기반 조성

### 02 • 인증 요건

#### 1. 조직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조직형태를 갖출 것



##### Tip.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조직 형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한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등 법률에서 규정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으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사단법인·재단법인)
  - 「상법」에 따른 회사(주식·유한·합자·합명·유한책임회사)·합자조합
  - 「특별법」에 따른 법인·비영리민간단체 등
- 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②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③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④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⑥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어업회사법인, 개별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

## 2. 유급근로자 고용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 Tip. 유급근로자를 고용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사회적기업에서 “유급근로자”란, 고용형태(정규직, 계약직 등)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특히,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기업은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며, 사회적 목적의 실현 유형 중 일자리제공형은 평균 3명 이상(6개월 평균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그 기간 평균)을 고용해야 합니다.

## 3. 사회적 목적의 실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Tip. 가장 중요한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사회적 목적의 실현”

기업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는 데 가장 중요하게 심사되는 부분입니다. <5가지 유형>  
사회적 목적 실현에 따라 사회적기업은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① 일자리제공형  
인증 신청 기업은 다섯 가지 유형 중 자신의 사회적 가치에 따라 하나를 선 ② 사회서비스제공형  
택해야 합니다. 신청 전월 기준 6개월(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③ 혼합형  
에는 그 기간)의 실적을 확인하게 됩니다.(‘19년 지침개정) 실적 증명 방법 ④ 지역사회공헌형  
은 유형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적합한 방법을 통해 증빙하여야 합니다. ⑤ 기타(창의·혁신)형

## 4.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 Tip. 이해관계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영리기업은 주주와 대표자 등 지분 소유자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 반해, 사회적기업은 지분 소유자, 근로자 대표, 서비스 수혜자 대표, 지역 관계자, 외부 전문가, 후원자, 연계기업 등 기업 활동에 이해관계가 있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정관이나 운영 규정에 이와 관련한 내용을 명시하여 의사결정 구조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실질적인 회의체가 운영되어야 합니다.

##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노무비의 50%이상일 것

### Tip. “노무비의 50% 이상”을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인증 신청월 직전 6개월(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같은 기간 지출된 노무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18년 시행령 개정) 만약 유급근로자의 지난 6개월 급여가 1,000만 원이라면 지난 6개월간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이 5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6. 정관의 필수사항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 Tip.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추어야 한다.

1. 목적
2. 사업내용
3. 명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7. 출자 및 용지에 관한 사항
8.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7.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등)

### Tip. “사회적 목적”的 기준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사회적 목적의 범위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사업, 고용 확대를 위한 시설투자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좋은 품질의 영양을 공급하고 지역 여성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요거트를 판매하는 회사가 더 많은 아이에게 요거트를 공급하기 위해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신축 공장에 투자하는 등의 행위가 그 예입니다.

## 03 • 인증 절차

사회적기업 인증은 인증 신청 기업이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증 요건과 특성 및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심사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게 됩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은 연중 상시 접수 제로 운영되며 심사는 신청 현황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개최합니다.

### Tip.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

|                        |                              |
|------------------------|------------------------------|
| 1. 인증 계획 공고            | (고용노동부 주관)                   |
| 2. 상담 및 안내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센터) 주관)          |
| 3. 인증 신청 및 접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본원) 주관)          |
| 4. 신청서류검토 및 현장설사 계획 수립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센터) 주관)          |
| 5. 현장 실사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센터) 주관)          |
| 6.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추천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본원)→중앙부처, 광역지자체) |
| 7. 검토 보고자료 제출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본원, 센터)→고용노동부)   |
| 8. 인증 심사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 주관)     |
| 9. 인증 결과 안내 및 인증서 교부   | (고용노동부, 인증서 전산발급(20.3월~))    |

### Tip.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절차

|                  |               |
|------------------|---------------|
|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 (광역자치단체·관할부처) |
| 2. 신청 및 접수       | (광역자치단체·관할부처) |
| 3. 심사 및 선정       | (광역자치단체·관할부처) |
| 4.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광역자치단체·관할부처) |

## 04 •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 안내

### 전국 대표 번호 1551-2024

\* 해당 권역 성장지원센터로 자동 연결

전국의 통합센터(6개소)를 통해 초광역단위별 사회적기업 인·자정, 사회적가치 측정, 모니터링 등 공공행정 업무를 수행하며, 사회적기업 관련 대국민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반센터(13개소)에서는 사회적기업 모니터링, 안내·상담 업무가 가능합니다.

| 권역  | 구분 | 센터명               | 주소   | 전화번호           |
|-----|----|-------------------|--|----------------|
| 서울1 | 통합 | 소셜캠퍼스 온 서울 (성수)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86 아인빌딩 8,9층                 | 02-467-2510-8  |
| 서울2 | 일반 | 소셜캠퍼스 온 서울 (당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2로 57 이레빌딩 16층                 | 02-3667-8408-9 |
| 인천  | 일반 | 소셜캠퍼스 온 인천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991(송도동) 에너 오션빌딩 11, 12층    | 032-858-7671~4 |
| 경기1 | 통합 | 소셜캠퍼스 온 경기 (성남)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182 KT모란빌딩 5, 6층           | 031-757-2501   |
| 경기2 | 일반 | 소셜캠퍼스 온 경기북부 (양주) | 경기도 양주시 덕계로 1400 진산메디프리자빌딩 4, 5층             | 031-868-8061   |
| 강원  | 일반 | 소셜캠퍼스 온 강원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상지대길 83 상지대학교 누리관 1, 2층          | 033-748-8661   |
| 광주  | 통합 | 소셜캠퍼스 온 광주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무대로 198 KTH티워 4, 5, 6층            | 062-946-2166   |
| 전남  | 일반 | 소셜캠퍼스 온 전남        |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118(호남동) 주식회사 KT 목포빌딩 9층        | 061-247-9904   |
| 전북  | 일반 | 소셜캠퍼스 온 전북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흥자로 174 DNB빌딩 5, 6층          | 063-223-2501   |
| 제주  | 일반 | 소셜캠퍼스 온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1296-8 제주관광 대학교 교육관 3, 4, 6층 | 064-749-7540   |
| 세종  | 통합 | 소셜캠퍼스 온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KT&G세종타워A 6층               | 044-903-0782   |
| 대전  | 일반 | 소셜캠퍼스 온 대전        |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39 대교 눈높이 사옥 3, 4층            | 042-489-5790   |
| 충남  | 일반 | 소셜캠퍼스 온 충남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773, 응주프라자 3, 4, 5층        | 041-549-7762   |
| 충북  | 일반 | 소셜캠퍼스 온 충북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복문로3가 15-1 우민타워 3층              | 043-259-8773   |
| 대구  | 통합 | 소셜캠퍼스 온 대구        |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160 대구 스테이션센터 10, 11층           | 053-431-9826   |
| 경북  | 일반 | 소셜캠퍼스 온 경북        | 경상북도 구미시 이계북로 7(임수동), 경상북도경제진흥원 6층, 8층       | 054-476-6519   |
| 부산  | 통합 | 소셜캠퍼스 온 부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688 국민연금공단 남부분사 지사 사옥 5, 6층    | 051-753-2506   |
| 울산  | 일반 | 소셜캠퍼스 온 울산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 극동방송빌딩 7, 8층                | 052-276-2506   |
| 경남  | 일반 | 소셜캠퍼스 온 경남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367, 에스엠이 김해빌딩 7층             | 055-338-2760   |

★통합센터: 공공행정 지원, 안내 및 상담 ☆일반센터: 안내 및 상담

# 3

## 사회적기업 지원

### 1 사회적기업 지원 개요

### 2 사회적기업 지원 제도 및 지원사업

#### 1.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참고) 고용노동부 주요 장려금 제도 안내

#### 2.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 3. 주요 지원 내용



### 01 · 사회적기업 지원 개요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강화와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는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본 책에서는 '정부 지원 부문'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민간이 연계하여 조성된 '민간 지원 부문'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Tip. 정부가 왜 사회적기업을 지원해야 하나요?

오늘날 한국 사회는 고용 없는 성장,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러한 사회 문제를 시장 또는 정부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이에 대응하여 우리 사회의 지속기능성과 공동체 구성원의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그 가치와 성과는 여러 국내·외 사례를 통해 오랜 기간에 걸쳐 검증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며,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 02. 사회적기업 지원 제도 및 지원사업

## 1.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지원 제도

| 지원제도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
|-----------|--|------|----|
|           |  | 예비   | 인증 |
| 경영컨설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적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지원주제 등을 다양화하여 컨설팅 지원</li> <li>지원한도: 총 5회(연간 1회), 예비사회적기업은 연 1천만 원 이내</li> <li>지부단: 신청예약금액에 따라 금액 구간별 10~50%</li> </ul>  | ○    | ○  |
| 공공기관 우선구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활용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권고</li> <li>* 대상(종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국기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863개소(23년)</li> </ul>  | -    | ○  |
| 판로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적기업 제품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판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오프라인) 협력마켓 92개소 운영, (온라인)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플랫폼(e-store 3.65) 운영</li> <li>(TV홈쇼핑) 상품 발굴 및 방송 지원</li> <li>(유통확대 지원) 다양한 유통채널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제공</li> <li>(입점역량 강화) 상품 진단, 상품 개선, 유통채널 입점 연계</li> </ul> </li> </ul> | ○    | ○  |
| 세제지원 제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 50% 감면</li> <li>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25% 감면</li> <li>개인자기방소득세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li> <li>사회적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기차세 면제</li> </ul>   | -    | ○  |
| 모태펀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용노동부 모태펀드 출자 및 민간 출자자 참여를 통해 사회적기업 투자조합 결성 및 (예비) 사회적기업 등에 투자(9개조합, 568억원 규모)</li> </ul>   | ○    | ○  |

### Tip. '24년 지원사업 주요 변동사항'

'24년부터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고용 인건비는 고용노동부 주요 장려금과 통합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부 주요 장려금 제도 페이지를 참고하시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주요 장려금 제도 안내

'24년부터는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고용 인건비를 아래의 고용장려금과 통합하여 지원합니다.

|  |
|--|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
| (☞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연중 수시신청)  |
| ·(요건) 5~49인 사업주가 장애인 신규고용하여 6개월 고용유지   |
| ·(지원수준) 신규고용 1인당 월 35~90만원   |
| 장애인 고용장려금  |
| (☞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연중 수시신청)  |
| ·(요건) 장애인 의무고용률(3.1%)을 초과하여 장애인 고용   |
| ·(지원수준) 초과고용 한 장애인 1인당 월 35~90만원   |
| 장애인 인턴제  |
| (☞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연중 수시신청)  |
| ·(요건) 특정유형 중장장애인 등을 채용한 사업체에서 장애인 인턴으로 채용  |
| ·(지원수준) 인턴기간 월 임금의 80% 지원(최대 월 100만원, 최대 6개월), 정규직 전환시 월 임금의 80% 추가 지원(최대 월 80만원, 최대 6개월)      |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
| (☞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연중 수시신청)  |
| ·(요건) 만 18세 이상 구직 장애인 등에 대해 단계별 서비스 지원   |
| ·(지원수준)  |
| 1단계) 참여수당(15만원),   |
| 2단계) 직업훈련(월 284천원), 구직역량강화(최대 10만),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최대 6개월) 등                                    |
| 3단계) 취업성공수당 30~80만원(최대 150만) 지원  |
| 고용자 계속고용장려금  |
| (☞ 문의: 고용부 고용상담센터, 1350, 연중 수시신청)  |
| ·(요건)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회적기업에서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정년 연장(1년 이상), 정년 폐지, 정년도달자 계속고용 등 계속고용제도를 도입       |
| ·(사회적기업은 대구도 기업도 지원 가능)  |
| ·(지원수준)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최대 3년간)  |
| 고령자 고용지원금  |
| (☞ 문의: 고용부 고용상담센터, 1350, 연중 수시신청)  |
| ·(요건)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회적기업에서 매분기 고용하고 있는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최초 산정일이 속한 분기의 직전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 |
| ·(사회적기업은 대구도 기업도 지원 가능)  |
| ·(지원수준) 매 분기별 증가한 고령자 수 1인당 30만원(최대 2년간)   |
| 고용촉진장려금  |
| (☞ 문의: 고용부 고용상담센터, 1350, 연중 수시신청)  |
| ·(요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워크넷) 등에 구직 등록한 실업자 등을 6개월 이상 고용                        |
| ·(지원수준) 1년간 매 6개월마다 360만원 지급(대구도 기업 180만원)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 (☞ 문의: 고용부 고용상담센터, 1350, 연중 수시신청)  |
| ·(요건) 5인 이상 사업장이 취업예로청년을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 ·(최근 3년 내 SVI 측정 닥을 우수 사회적기업은 5인 미만도 가능)   |
| ·(지원수준)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
|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  |
| (☞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관할지자, 연중 수시신청)  |
| ·(요건)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하는 월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 등  |
| ·(지원수준) 근로자 및 사업주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

## 2.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 구분               | 지원사업         | 지원내용   |
|------------------|--------------|--|
| 초기단계             |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적기업을 지향하는 창업 초기기업이 안정적인 공간에서 활발히 사업을 펼치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하도록 지원</li> <li>*상시상담, 교육, 멘토링, 지원연계 등 성장지원 프로그램과 업무환경 및 협업공간 제공</li> </ul>         |
| 사회적 가치 측정 지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측정하여 우수 기업 발굴·확산</li> <li>사회적 가치 측정 결과를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 우수기업 대상 지원사업 연계 확대</li> </ul>                      |
| 맞춤형 판로지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품 진단 및 개선 지원</li> <li>홈쇼핑, 온라인몰, 박람회 및 스토어 36.5 등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진출 강화</li> <li>사회적경제 판로지원 통합플랫폼(e-store36.5)을 통한 판로지원 인프라 구축·확산</li> </ul> |
|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 | 공공기관 우선구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기관에서 제품을 구매하여 사회적기업에 보호된 시장을 제공(인증사회적기업인 가능)</li> </ul>   |
|                  | 전문컨설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전진단 및 전문가 마칭, 수요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예비)사회적기업의 역량 강화 및 현안 해결을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및 자립 경영 뒷받침</li> </ul>  |
|                  | 사회적금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적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정보 취합 및 확산 지원으로 금융 접근성 제고</li> <li>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자금조달 기회 다각화 지원</li> </ul>   |
| 민간자원 연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적기업과 협업 파트너 발굴 및 연계 지원</li> <li>공공·민간 부문과 사회적기업간 협업 제반 확대</li> </ul>  |
| 교육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적기업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통해 사회적기업가 및 종사자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li> </ul>  |

## 3. 주요 지원 내용

### ① 초기 단계

#### •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소셜캠퍼스 온)

\* 소셜캠퍼스 온: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의 브랜드로 사회적기업을 위한 캠퍼스 역할과 따뜻하다(溫), 성장(On)의 중의적 의미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는 사회적기업을 준비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안정적인 공간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펼치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성장지원센터는 입주기업이 초기 창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사무공간, 회의실 등 인프라와 역량 강화를 위한 상시 상담, 교육, 네트워킹, 협업, 지원 연계 등 다양한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2017년 서울1(성동구) 개소를 시작으로 부산, 전북, 경기, 대전, 대구, 울산, 강원, 광주, 서울2(영등포구), 충남, 경북, 경남(김해·진주), 인천, 전남, 제주, 충북, 세종, 경기 북부 등 총 19개 성장지원센터가 전국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센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통합정보시스템(sesi.or.kr)에 입주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회적기업 진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필요시 심사) 절차를 거쳐 최대 5년까지 입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 누구나 쉽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 교육, 상품·서비스 체험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내 사회적기업 거점 역할도 폭넓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 Tip.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소셜캠퍼스 온) 위치 및 연락처

| 구분        | 지원사업                                     | 전화번호                           |
|-----------|--|--------------------------------|
| 서울 (성수)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86 아인빌딩 8, 9층            | 02-467-2510~8                  |
| 부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688 국민연금공단 남부산지사 사옥 5, 6층  | 051-753-2504~7                 |
| 전북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협자로 174 DNB 빌딩 5, 6층        | 063-223-2501~3                 |
| 경기남부 (성남)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182 KT모란빌딩 5, 6층       | 031-757-2501                   |
| 대전        |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39 대교 눈높이사옥 3, 4층         | 042-489-5791~3                 |
| 대구        |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160 대구스테이션아울렛 10, 11층       | 053-431-9821~3, 053-431-9826~8 |
| 울산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 극동방송빌딩 7, 8층            | 052-276-2506~7                 |
| 강원        |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길 83 상지대학교 대학원관 1, 2층         | 033-748-8661~3                 |
| 광주        |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198 KHT아워 4~6층            | 062-946-2166~8, 062-946-2172~4 |
| 서울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2로 57 이레빌딩 16층             | 02-3667-8408~9                 |
| 충남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773 응주프라자 3~5층         | 041-549-7762~4                 |
| 경북        |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7(임수동) 경상북도경제진흥원 6층, 8층      | 054-476-6517~9                 |
|           | (김해)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367 에스엠이 김해빌딩 7층     | 055-338-2760~1                 |
| 경남        | (진주) 경상남도 진주시 삼대동 295-4번지 경남과기대 취창입센터 2층 | 055-763-2690                   |
| 인천        | 인천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99(송도동) 애니오션빌딩 11, 12층    | 032-858-7671~2, 4              |
| 전남        |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118(호남동) KT목포빌딩 9층          | 061-247-9901<br>061-247-9903~4 |
|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1296-8 제주관광대학교 3, 4, 6층  | 064-749-7539<br>064-749-7540   |
| 충북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3가 15-1 우민타워 3층          | 043-259-8773                   |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KT&G 세종타워 A 6층         | 044-903-0781~5                 |
| 경기북부 (양주) | 경기도 양주시 덕계로 140 진산메디플라자 빌딩 4, 5층         | 031-868-8063                   |

\* 조성일자 순 정렬

## ②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 • 전문컨설팅

사회적기업의 다양한 경영 현안 해결을 위해 경영전략, 민간·공공 판로, 브랜딩·마케팅, 자금·재무, 생산·품질 관리, 지식재산권, 사회적 가치 제고 등과 같은 폭넓은 주제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은 해결이 필요한 경영현안에 따라 컨설팅 분야와 주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단독 신청하거나 동료기업들과 협업하는 방식으로 컨설팅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기업에게 꼭 필요한 문제를 발굴하여 우선순위의 과제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신청기업에게 무료 사전진단을 통한 과제 설계부터 지원해드립니다. 이를 통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전문가 풀에 등록된 경영 컨설턴트, 협업 경력자, 선배 사회적기업가 등 적합한 컨설턴트와 매칭하여 핵심 분야별 컨설팅을 집중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컨설턴트와 협의하여 수행계획을 수립하며, “목적 및 추진의지, 수행방안, 결과의 활용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선별 지원합니다.

### Tip. 전문컨설팅 신청 시 우대사항이 있나요?

| 가점       | 가점 요건   |
|----------|---|
| 1점       |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금융 지원사업에 신청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신청기업<br>직전년도 매출액이 15억원 이상인 신청기업<br>유급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신청기업<br>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은 지 1년 이내의 신청기업 |
|          | 직전년도 자율경영공시(기본·확장공시)에 참여한 신청기업<br>광역·지자체 사회적경제 협력기관에서 포상·공모 선정 등 우수성을 인정받은 신청기업   |
|          | 본 사업 수진 이력이 없는 신청기업<br>최근 3년(2021~23년)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에 참여 또는 현재(2024년) 참여 중<br>신청일 기준 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 <b>(선규)</b>            |
| 2점       | 진흥원 또는 협력기관에서 주관한 공신력 있는 진단과정을 거쳐 발굴된 컨설팅 과제를 보유<br>최근 3년(2021~23년) 사회적가치지표(SVI) 탁월 우수등급 ▶ 기업부담을 50% 인하<br><b>(선규)</b>    |
|          | 진흥원 또는 협력기관에서 주관한 공신력 있는 진단과정을 거쳐 발굴된 컨설팅 과제를 보유<br>최근 3년(2021~23년) 사회적가치지표(SVI) 탁월 우수등급 ▶ 기업부담을 50% 인하<br><b>(선규)</b>    |
|          | 최근 3년(2021~23년) 사회적가치지표(SVI) 탁월 우수등급 ▶ 기업부담을 50% 인하<br><b>(선규)</b>  |
| 3점       | 진흥원 또는 협력기관에서 주관한 공신력 있는 진단과정을 거쳐 발굴된 컨설팅 과제를 보유<br>최근 3년(2021~23년) 사회적가치지표(SVI) 탁월 우수등급 ▶ 기업부담을 50% 인하<br><b>(선규)</b>    |
|          | 최근 3년(2021~23년) 사회적가치지표(SVI) 탁월 우수등급 ▶ 기업부담을 50% 인하<br><b>(선규)</b>  |
| 자부<br>담률 | 최근 3년(2021~23년) 사회적가치지표(SVI) 탁월 우수등급 ▶ 기업부담을 50% 인하<br>▶ 면제   |

### Tip. 어떤 분야에 대해 전문컨설팅을 받을 수 있나요?

|           |  |             |   |
|-----------|--|-------------|---|
| 전략기획      | 01. 경영전략, 소셜미션-SVI<br>소셜미션 개발·고도화<br>사회적 성과 관리·측정·모니터링<br>이해관계자 간 협력<br>지역사회 소통·협업<br>경영전략·사업계획 수립<br>사업구조 개선, 사업성과 관리   | 기술개발<br>R&D | 07. 서비스·상품 개발 및 개선<br>신규/기존 서비스상품 개발·개선<br>08. 지식재산권·인증·R&D<br>인증 획득 유지<br>지식재산권 획득 유지<br>기술이전,<br>기술개발<br>R&D 자문 |
| 전사<br>인프라 | 02. 자금·재무·투자<br>자금계획·관리·운용<br>정책자금 및 사업 연계·활용<br>조달 및 관리<br>03. 회계·세무<br>기장·결산·회계 감사 수감<br>부가세·법인세 등 세무신고<br>계약체결        | 생산<br>운영    | 09. 생산·품질 관리<br>상품 가공·조립·포장<br>생산설비 관리·보수<br>품질관리, 테스<br>트, 불량처리  |
| 인적자원      | 04. 법무<br>법제도 및 소송 대응<br>05. 정보화·디지털 전환<br>IT 및 디지털전환<br>06. 인사·노무, 안전보건<br>인력 채용·관리<br>노무급여·복리후생<br>교육·훈련·평가<br>안전·보건관리 | 물류·<br>유통   | 10. 물류·유통·재고관리<br>주문서 접수 및 처리포장<br>출하 배송납품<br>재고관리  |
|           | 07. 서비스·상품 개발 및 개선<br>신규/기존 서비스상품 개발·개선<br>08. 지식재산권·인증·R&D<br>인증 획득 유지<br>지식재산권 획득 유지<br>기술이전,<br>기술개발<br>R&D 자문        | 마케팅·<br>판매  | 11. 브랜딩·디자인·마케팅<br>광고·홍보<br>디자인전략<br>브랜딩 마케팅<br>기획 및 실행   |
|           | 12. 영업·판로개척<br>판촉 및 영업 전략<br>수립·실행<br>신규 유통채널/ 고객<br>개척·발굴<br>점포관리   | 고객<br>서비스   | 13. 공공시장·사회서비스 진출<br>공공시장 진출/입점 지원<br>14. A/S, 고객관리<br>상품 설치, 이용 지원<br>고객가치제고<br>사후관리<br>고객관리                     |

### • 세제 지원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를 감면해줍니다. 먼저 소득세와 법인세는 3년간 100%, 향후 2년 50%를 감면해줍니다. 또 취득세는 50%, 재산세는 25%를 감면해줍니다.

\* 소득세·법인세: 인증 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발생 소득이 없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00% 감면 + 그 후 2년간 50% 감면

### Tip. 왜 사회적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나요?

사회적기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이나 사회서비스 공급 등의 기능과 역할을 대행 또는 보완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 정부 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에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 • 공공기관 우선구매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제품(제화 및 서비스)을 우선 구매하도록 법적으로 제도화한 것입니다. 공공기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 중 사회적기업의 제품이 있는 경우, 사회적기업 상품을 먼저 고려해 구매하도록 독려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높여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Tip.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 12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①항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또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초 해당연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계획과 전년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매년 이를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는 사회적기업의 발전과 성장을 응원하는 국가차원의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Tip. 공공기관에서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예시는 무엇인가요?

공공기관에서 주로 구매하는 사회적기업 제품 품목으로는 기념품, 도시락, 청소, 인쇄, 사무용품, 문화공연, 각종 체험 등이 있습니다.

### • 판로 지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다양한 판로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통합플랫폼(e-store 36.5)」은 공공·민간시장 진출 지원을 위하여 상품물·공공구매 지원·판로정보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통채널에 입점 및 상품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진단·개선을 지원하는 「소셜벤더 운영사업」과 TV홈쇼핑 및 온라인 유통채널 등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대형 유통채널 진출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에서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 할 수 있는 전국 92개의(24년 7월 기준) 사회적기업 제품 공동판매장(스토어 36.5)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Tip. 판로지원 프로그램 세부 내용

- |                 |  |
|-----------------|--|
| 소셜벤더 운영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적경제기업의 종합적인 판로개척 활동을 수행하는 유통 전문조직을 육성</li> <li>유통채널 입점요건 충족을 위한 기본·중점 상품 개선(상품 사진 촬영, 패키지 디자인 및 홍보를 개선 등)을 지원</li> <li>개선 완료된 상품 대상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 입점 연계 지원</li> </ul>                                |
| 유통채널 진출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V홈쇼핑 온라인몰 특별전 개최 등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 진출 지원</li> <li>스토어 36.5 모니터링 및 운영지원, 수발주 지원, 브랜드 홍보물, 프로모션 등 지원</li> </ul>   |
| 판로지원 인프라구축 및 확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적경제 판로지원 통합플랫폼(e-store 36.5) 구축 및 운영을 통한 판로 확대 및 이용자 대상 공동조달 등 맞춤형 정보 제공</li> <li>신규 사회적경제 기업별 상품 서비스 DB 발굴 및 정보 제공</li> <li>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지원)</li> <li>판로지원 정보 제공 및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 등 제도 개선</li> </ul> |

### •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지원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성과와 그 영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사회적가치지표(SVI)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가치 수준을 종합 측정하여 대외신뢰도 제고 및 외부기관과 사업연계를 지원합니다.

#### Tip. SVI 측정 우수기업 지원 세부 내용

|               |  |
|---------------|--|
| 사업연계 추진       | 정부·지자체 지원사업, 재정지원, 금융지원, 컨설팅 및 교육 등 연계 |
| 기관 표창 등 수여    | 진흥원장상 수여,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유공표창 시 가점 부여     |
| 공공·민간기관 대상 홍보 |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 대상 홍보, 진흥원 공식 블로그 등 홍보지원 |

### • 사회적 금융 지원

사회적기업에 대한 주요 정책금으로 미소금융(서민금융진흥원), 중소기업 정책자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회적기업 나눔보증(신용보증기금),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지역 신용보증재단) 등이 있습니다. 정책자금 신청은 각 기관의 홈페이지 및 유선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조달 기회 다각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크라우드펀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Tip. 금융 지원 세부 내용 (각 기관 홈페이지 및 유선전화를 통해 신청 안내)

| 사업명              | 주체             | 내용   |
|------------------|----------------|--|
| 미소금융<br>사회적금융 대출 | 서민금융진흥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대상 부지구입비·시설비·운영자금 등 융자·지원</li> <li><a href="http://www.kirin.or.kr">www.kirin.or.kr</a> / Tel. 1397</li> </ul>   |
| 중소기업<br>정책자금     | 중소벤처기업<br>진흥공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사회적경제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하여 제도권 금융기관보다 저리의 대출 방식으로 사업화 자금 등 지원</li> <li>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 융자·지원</li> <li><a href="http://www.kosmes.or.kr">www.kosmes.or.kr</a> / Tel. 1357</li> </ul> |
| 사회적기업<br>나눔보증    | 신용보증기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신용보증 공급</li> <li><a href="http://www.kodit.co.kr">www.kodit.co.kr</a> / Tel. 1588-6565</li> </ul>   |
| 사회적경제기업<br>특례보증  | 신용보증재단<br>중앙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적경제기업 대상 특별 보증 운영</li> <li><a href="http://www.koreg.or.kr">www.koreg.or.kr</a> / Tel. 1588-7365</li> </ul>   |

## •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

사회적경제 저변 확대 및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운영합니다. 소셜클래스(사회적기업 교육 플랫폼)를 통하여 사회적경제기업 대표자, 종사자, 예비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가치, 기획·전략, 인사노무, 판로·마케팅, 세무회계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제공합니다. 또한, 청소년 대상 사회적기업을 이해하고 관련 진로 탐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체험형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Tip.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 사업

| 대상                  | 주요 사업           | 내용  |
|---------------------|-----------------|---|
| 사회적경제 종사자, 예비 창업자 등 | 사회적기업 교육<br>플랫폼 | 사회적기업 경영 기획·전략, 인사노무, 홍보·마케팅, 판로 등 다양한 교육대상자별/분야별 교육 제공 |
| 학교, 청소년             | 청소년 사회적경제 봉사학습  | 청소년의 사회적경제 진로 탐색 및 사회적기업가 정신 함양을 위한 체험 교육               |



### Tip. 대표적인 협력 프로그램

#### ① KDB나눔재단『고용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

KDB나눔재단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2015년부터 사회적경제기업 약 120여개를 선발해 시설설비 및 장비 구입 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22년부터 진흥원 표준형 컨설팅 지원사업과 연계한 <ESG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친환경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scale-up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② 하나금융그룹『HANA POWER ON 혁신기업 인턴십』

하나금융그룹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장애인, 경력보유여성, 청년디자이너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230개 기업). 인턴십 참여여들은 인턴십 활동을 통한 사회 문제 해결 경험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각자의 역량을 계발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또 사회적경제기업은 인턴십 과정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고, 후속 지원을 연계함으로써 기업 성장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 ③ 사회성과인센티브(SPC: Social Progress Credit)

사회성과인센티브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창출한 사회문제 해결 성과를 화폐화로 측정하고 보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SPC는 사회성과의 정확한 측정과 성과에 비례한 인센티브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투자와 인재가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까지 368개 SPC참여기업들은 3,930억원의 사회성과를 창출했으며, 사회성과에 비례하여 총 603억원의 현금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습니다.

## • 프로보노 지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경영 자문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간 협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변리사 등 직능단체 프로보노가 사회적경제기업의 법률·노무·변리 분야 자문을 지원하며, 기업 및 청년(대학생) 프로보노가 협업하여 직무 경험·전문 지식·창의력·아이디어 제공을 통해 기업 운영 개선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 공공·민간 자원 연계

공공·민간 부문의 다양한 자원을 사회적경제와 연계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민간과 공공 부문의 다양한 협업 자원을 발굴하고, 실질적 협력을 연계함으로써 공공과 민간, 사회적경제가 함께 하는 집합적 임팩트(Collective Impact) 창출을 지원합니다.



### Tip.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공공·민간 파트너와 협력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다년간의 공공과 민간 부문과의 협업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기업/기관에 맞는 맞춤형 협업 프로젝트 제안을 진행합니다. 주요 협업 유형으로는 ▲ 사회 문제 해결 프로젝트 지원 ▲ 시설비 지원 ▲ 재능나눔(프로보노) ▲ 성장을 위한 금융 및 투자 지원 ▲ 공간 지원 ▲ 판로 및 마케팅 지원 등 기업별 특성에 맞는 협업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성장지원팀(031-697-7761)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 4

## 사회적기업 유형

- 1 일자리제공형
- 2 사회서비스제공형
- 3 혼합형
- 4 지역사회공헌형
- 5 기타(창의·혁신)형



### 01 • 일자리제공형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동시장에 통합시키는 유형입니다.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이 30%가 되어야 인증 받을 수 있습니다.



#### Tip. 취약계층은 어떻게 정의하나요?

취약계층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이야기합니다. 취약계층으로는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장기실업자,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결혼이민자, 범죄구조 피해자 등이 있습니다.

#### 대표 사례

##### 주식회사 가온아이피엠



“통합해중방제로 건강한 일자리를 만들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듭니다”

#2023년 SVI '탁월' 기업 #건강한 일자리 #방역소독 #해충방제 #방역소독기제조

주식회사 가온아이피엠은 통합해중방제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입니다. 가온아이피엠은 방역근로자들의 열악한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전문가로 성장시켜 이들이 사회인으로서 높은 자부심을 갖고 자립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직원들이 자부심과 프로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쌓아온 직원들의 자부심과 프로의식은 가온아이피엠의 자랑이자 힘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진정성을 갖고 방역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http://www.mkhealth.co.kr/news/articleView.html?idno=60457>

가온아이피엠은 해충방제 방역소독을 전문으로 하며, 무분별한 살충제 사용을 지양하고 인간과 환경에 덜해로운 통합해충방제(IPM) 기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포총기와 천연살충제와 같이 친환경적 방역제품을 개발하여 특허를 획득하였으며, 취약 계층에 대한 방역 소독 봉사로 주거환경과 안전을 개선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 02 • 사회서비스제공형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인증받기 위해서는 전체 서비스의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가 되어야 합니다.



### Tip. 사회서비스란 무엇인가요?

사회서비스란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 등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위 사회서비스 외에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해당할 경우 탄력적으로 인정

### 대표 사례

#### 행복나무통합심리상담센터 주식회사



통합심리상담센터(주)

“나는 사랑받고 있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야”

#2023년 SVI '탁월' 기업 #심리치료프로그램 #전문심리상담센터 #복지사각지대 사회서비스 제공

행복나무통합심리상담센터는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아동, 청소년, 가족, 성인을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제공형 사회적기업입니다. 아동과 청소년, 성인들이 치료과정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돋는 전문심리상담센터입니다.

특히,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전문 상담사들을 갖춘 센터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해소와 더불어 발달장애 아동들의

인지향상과 사회성 향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행복나무통합심리센터에서는 아동부터 성인, 부부에 이르는 심리상담과 인지검사 등의 검사를 받아볼 수 있으며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계성지능인을 위한 IT활용 놀이 프로그램인 '해피브레이'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학교, 어린이집, 주간보호센터 등에 지속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아동은 건강한 부모 건강한 가족에서 나온다는 평범한 진리 아래 아동, 부모, 가족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심리치료를 진행하여 아동과 청소년 성인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03 • 혼합형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유형입니다. 해당 유형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전체 근로자와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각 20%가 되어야 합니다.

### 대표 사례

#### 주식회사 코끼리공장



“고장난 장난감 수리·소독하여 취약계층에게 기부”

#장난감 수리 #취약계층 기부 #페플라스틱 환경오염

매해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소각 처리하는 장난감을 수거·수리·소독하여 취약계층에 기부하는 코끼리공장은 아동복지사로서 장난감을 수리하고 순환하는 일이 수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장난감을 통해 빈부격차에 대한 문제를 경험했는데, 아이를 키우는 일반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는 장난감이 넘쳐나지만 저소득층 가정에는 비용적인 문제에 부딪혀 장난감을 구매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사용하지 않는 장난감의 재활용을 통해 장난감이 넘치는 가정과 부족한 가정에 균형을 맞추고자 했습니다.

사업화 과정에서 국내 폐기물로 버려지는 플라스틱 장난감이 야기하는 환경 문제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갖기 시작했고, 지금의 코끼리공장 결실을 내게 되었습니다.

초기 창업 당시, 국내에서 참고할 만한 사업 모델도 훈치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장난감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창고와 관리 인력의 부재, 장난감 수거

를 위한 차량 부족 등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후 폐 창고를 활용해 장난감 순환 공간을 마련하면서 장난감 수리·소독을 위한 지역 주민의 활발한 봉사활동, 아동복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고정적인 폐플라스틱, 재고 장난감 회수체계를 마련하여 고용과 매출 수준을 크게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출처: [https://kogongjang.com/bbs/board.php?bo\\_table=masonry1&wr\\_id=41](https://kogongjang.com/bbs/board.php?bo_table=masonry1&wr_id=41)

지금도 코끼리공장은 더 많은 아이들이 장난감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 사회적경제 기업과 협업을 통해 폐플라스틱 장난감이 유발하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끊임 없이 도전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 04 • 지역사회공헌형

지역사회공헌형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지역사회에 공헌하거나, 둘째, 지역의 빈곤·소외·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셋째, 지역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만족하면 지역사회공헌형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 Tip. 지역사회공헌형 유형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지역사회공헌형은 지역의 현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의 문제를 사회적 기업의 비즈니스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사업이 지역사회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대표 사례

#### 하효살롱협동조합



“청정 제주에서 자란 김굴과 보리로 지역을 살리다.”

#2023년 SVI '우수' 기업 #김굴과즙 #보리과즙 #지역문제해결 #지역경제활성화 #지역일자리창출

감귤로 유명한 제주. 그 안에서도 하효마을은 기후가 가장 온화하고 좋아서 감귤이 아주 맛있는 마을로 유명합니다. ‘이 맛있는 감귤을 사계절 내내 먹을 수 없을까.’ ‘맛은 똑같이 좋지만 모양이 좋지 않아 폐기처리 되는 감귤을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던 하효마을 부녀회원 25명이 모여 2017년 하효살롱협동조합을 설립하였습니다.

비상품 감귤로 '무언가'를 만들어 폐기되는 감귤도 살리고, 마을도 성장시키면서 농가소득을 올려보고자 주민들과 의기투합했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민을 '과즙'에 담았습니다. 제주보리와 제주감귤을 활용해 제주 전통한과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판로가 없었던 제주보리를 수매하고 과즙을 만들어 재구매 1위인 제품으로 이끌었고 간단한 식사 대용식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효살통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제품에는 "하효맘"브랜드를 활용하고, "하효맘"은 엄마들이 자녀의 안전과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정성으로 제품을 생산한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또한 감귤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감귤 푸드를 이용한 농가식당인 하효살롱을 운영하며, 지역과 함께하는 기업으로 꾸준히 성장해나가고 있습니다.

## 05 • 기타(창의·혁신)형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이나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사업모델을 가지고 있는 경우 기타(창의·혁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기타(창의·혁신)형의 경우 보다 다양한 사회적기업을 폭넓게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대표 사례

(주)미담장학회



"소셜 임팩트 브랜드로 지속가능하고 가치있는 소비문화를 확산합니다."

#2023년 SVI '우수' 기업 #차별없는 교육 환경 #소외된 학생들 #교육기부사업 #교육 프로젝트

(주)미담장학회는 청(소)년들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는 기타(창의·혁신)형 사회적기업입니다. 누구든지 의지만 있으면 찾아와서 공부할 수 있는 교육 공동체로서, 교육에 소외된 학생들 곁에서 힘이 되어주며,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공평한 교육기회의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미담봉사단으로 시작해 2013년 인증 사회적기업이 되었습니다. KAIST를 시작으로 경북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등 13개 대학의 800여 명 대학생 멘토들이 연간 5,000 여 명의 청소년들에게 교육과 재능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기부 사업과 함께 방과 후 초등학생들을 위한 돌봄교실, 청소년들의

공부방법, 진로, 전공 등을 멘토링 해주는 방과후학교 그리고 전국의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창의성과 다양한 분야의 융합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다양한 교육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담장학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 및 적극 활용하여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기부 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에 날개를 달아 줄 미담장학회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널리 뻗어져 나가 사회적기업과 가치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길 바랍니다.

A GUIDE TO



SOCIAL ENTERPRISE 2024



# 2024 한 손에 잡히는 사회적기업

A GUIDE TO SOCIAL ENTERPRISE 2024

**발행일** 2024년 9월

**발행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329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새마을금고빌딩(6~8층)

**발행인** 정현곤(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연락처** Tel.031-697-7700  
Fax.031-697-7889  
[www.socialenterprise.or.kr](http://www.socialenterprise.or.kr)

**제작/디자인** (주)시드로직

**ISSN** 2765-6438

\*이 책자의 내용은 무단으로 전재할 수 없습니다. 책자의 내용과 활용에 관한 문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간등록번호

11-B552745-000001-10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비매품 / 무료  
ISSN 2765-6438